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 · 관리

2017.6.



한국연구재단

# 목 차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연구비 일반사항



연구비 계상 및 집행



제재조치 및 환수



기타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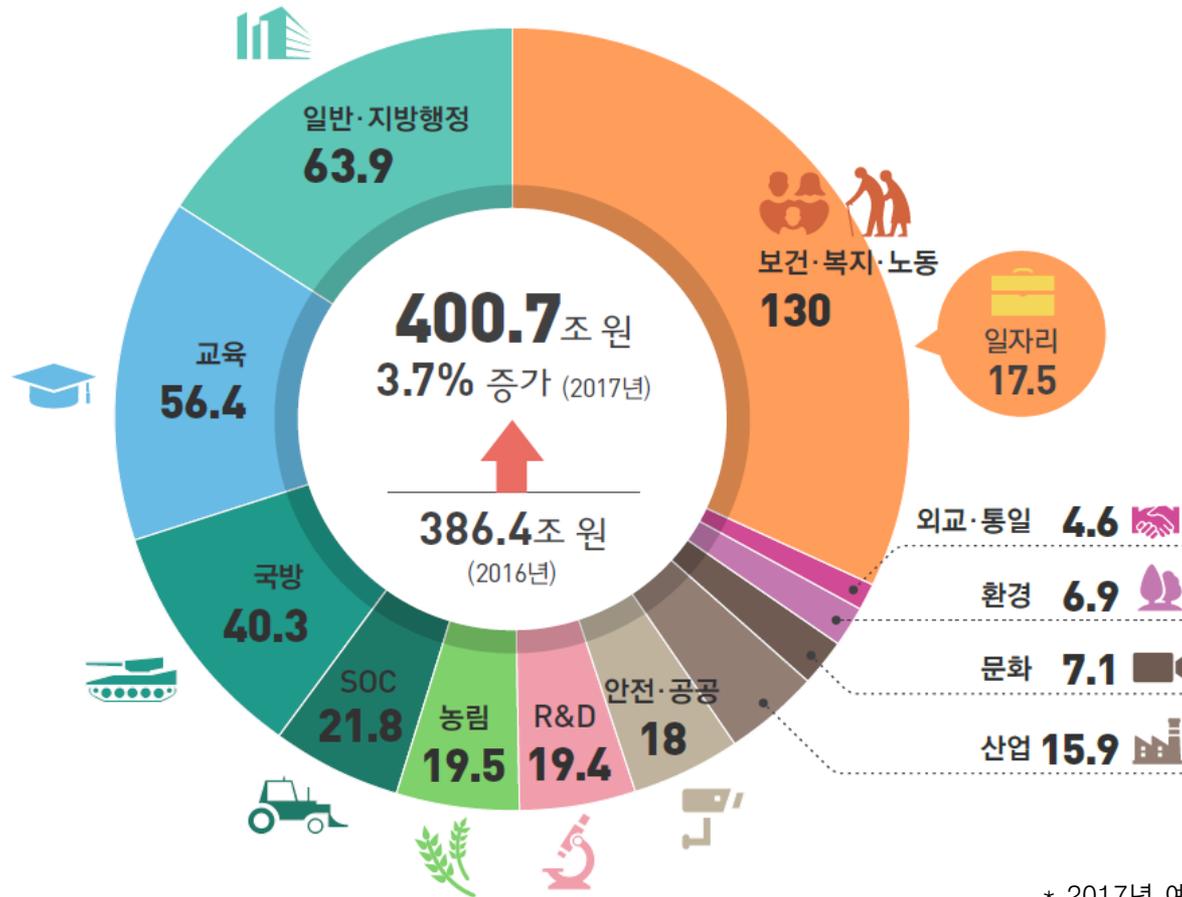


#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 I.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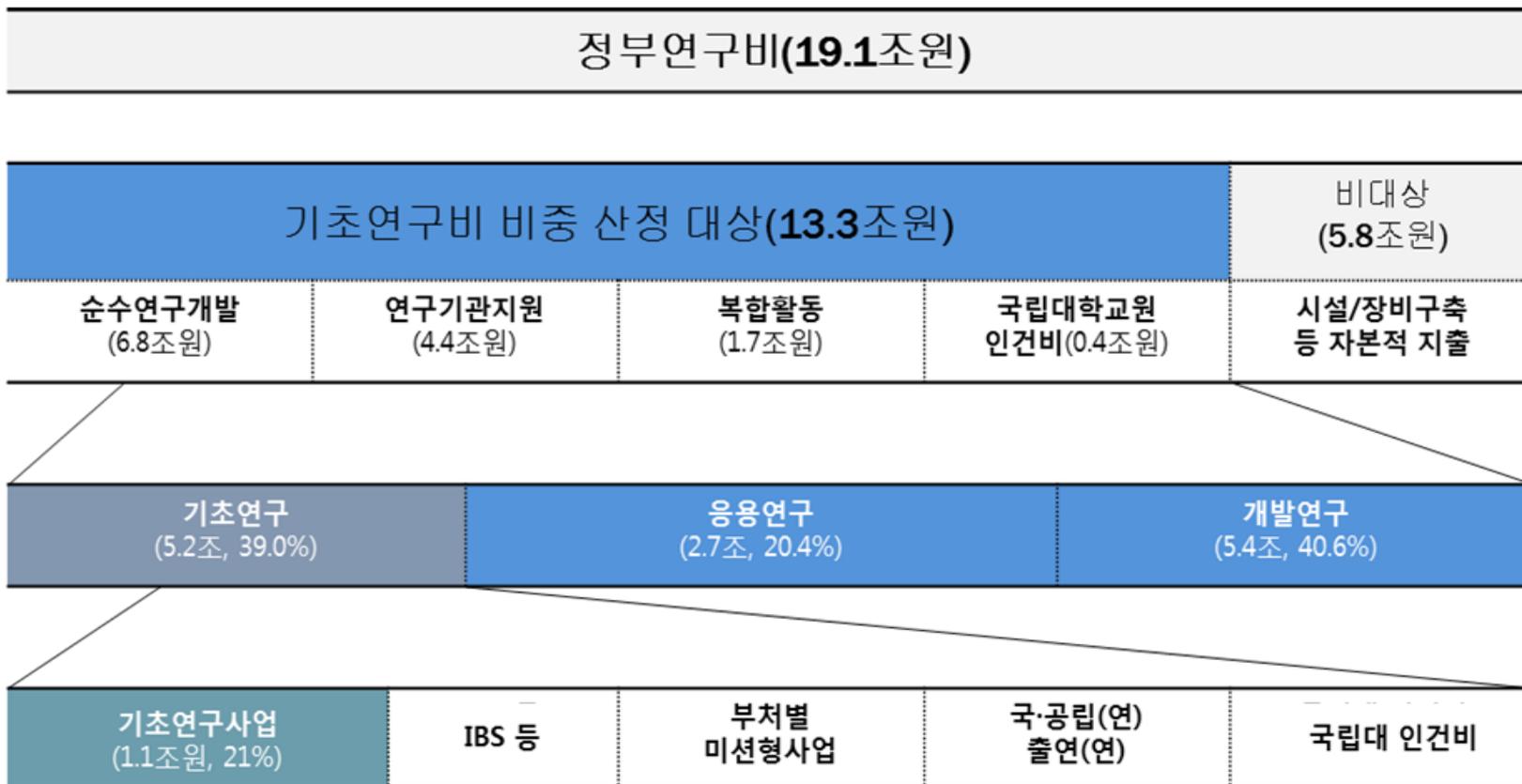
## 1 정부 총 예산 (2017)



\* 2017년 예산안(기획재정부)

# I.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 □ 정부 R&D 예산



# I.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 □ 2017년 연구재단 정부 수탁사업예산 현황

○ 연구개발, 인력양성, 연구진흥 및 기반구축, 국제협력 등 4조 7,471억원

(단위:억원)

총 4조 7,471억원		미래부(2조 6,281억원)	교육부(2조 908억원)	기타(282억원)
<b>I. 연구개발</b>		<b>II. 인력양성</b>		
□ 기초연구진흥	9,620	□ BK21 플러스	3,001	
□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7,106	□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2,562	
□ 원자력 진흥 및 안전	2,571	□ 지방대학육성	2,310	
□ 우주개발진흥	4,923	□ 대학교육역량강화	2,996	
□ 학술연구역량강화	2,435	□ 과학기술인력양성	268	
□ 이공학학술연구조성	3,864	□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 등	146	
3조 519억원 (64.3%)		1조 1,283억원 (23.8%)		
<b>III. 연구진흥 및 기반구축</b>		<b>IV. 국제협력 등</b>		
□ 과학기술기반조성사업	362	□ 국제화기반조성	265	
□ 평생교육직업체제구축	201	□ 동북아R&D허브기반구축	99	
□ 공공연구성과활성화	559	□ 글로벌협력기반조성	35	
□ 특성화전문대 육성	3,568	□ 국제교육협력증진	12	
□ 과학문화창달 등	522	□ 과학기술국제협력네트워크	46	
5,212억원 (11.0%)		457억원 (0.9%)		

# I.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 2 정의 및 법령체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부처가 법령에 근거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 개발과제를 특정하여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 I.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 3 부처별 세부규정

부처	세부규정
교육부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운영요령』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 소관 재난안전관련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기상청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사업운영규정』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산림청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I.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 4 과학기술분야 관련 규정 및 지침(미래부&교육부)

### 과학기술분야

####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6.7.1. 이하 “공동관리규정” )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6.4.29)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4.5.13)

#### 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 지침(2016.2.18)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미래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재단)

# I.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 4 과학기술분야 관련 규정 및 지침(미래부&교육부)

### 과학기술분야

####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6.7.1. 이하 “공동관리규정” )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및 제19조 등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및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이 미비한 집행 금액 등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도록 되어있다.

# I.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 5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용어

- **공동관리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약칭
- **전문기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행정권한의 위탁절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
-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며, 연구비 또한 주관하여 관리

# I.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 5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용어

- **비영리기관**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구분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말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구분
- **연구개발서비스업**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또는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 **출연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

# I.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 5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용어

- **정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 연구기관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
- **부당집행**  
연구비를 연구수행의 용도로 사용하였지만 공동관리규정 별표2, 별표2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연구비 용도외 사용**  
연구비를 연구목적과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 I.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 5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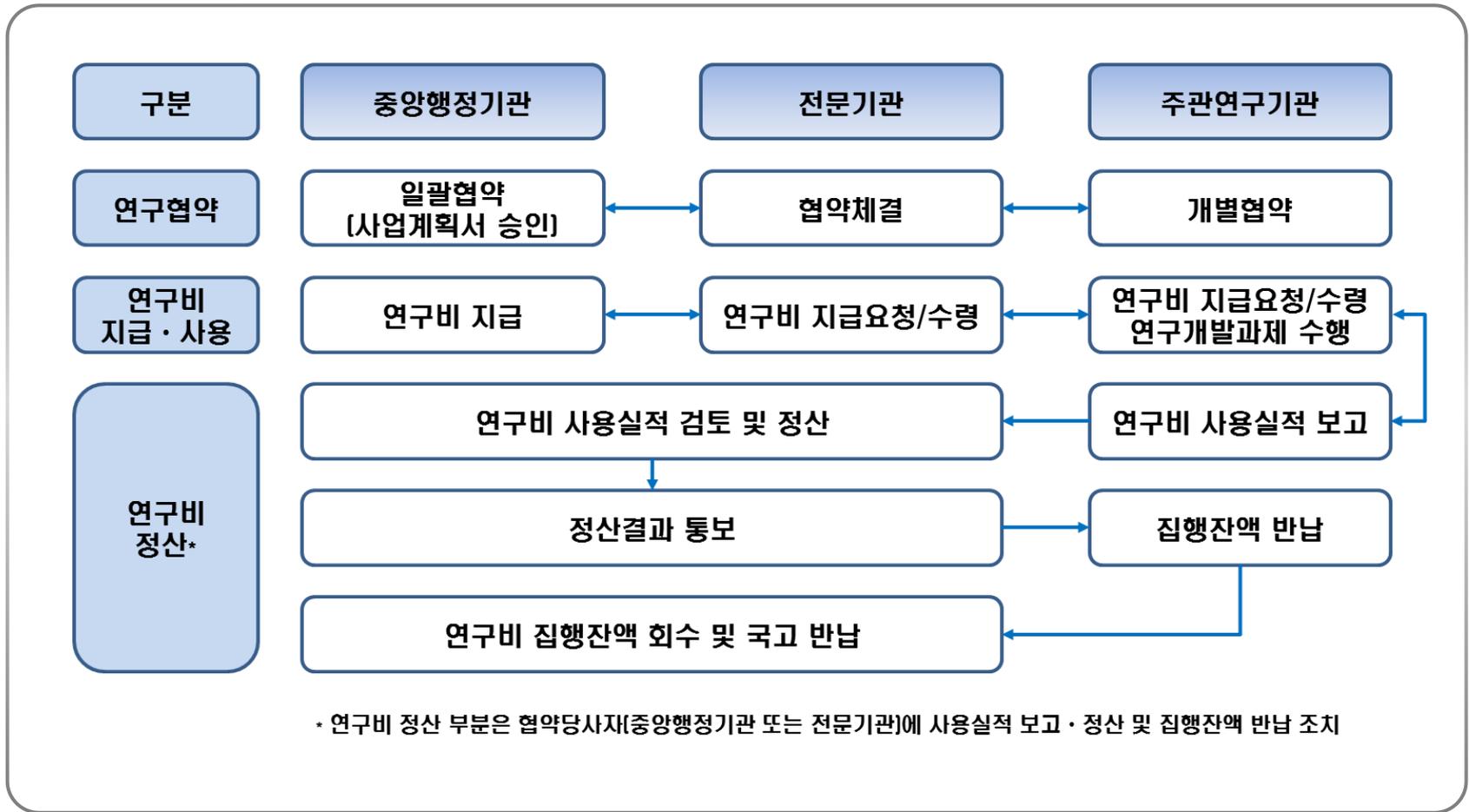
- **계속 과제**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이며 연차 협약과제와 다년도 협약과제로 구분
- **연차 협약과제**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 과제 중 매 연차 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를 말하며 대부분의 과제에 적용
- **다년도 협약과제(단계별 협약과제)**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 과제 중 연구기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 과제로서 최초 협약 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별 연구기간을 대상으로 협약 체결하는 과제



## 연구비 일반사항

# II. 연구비 일반사항

## 1 연구비 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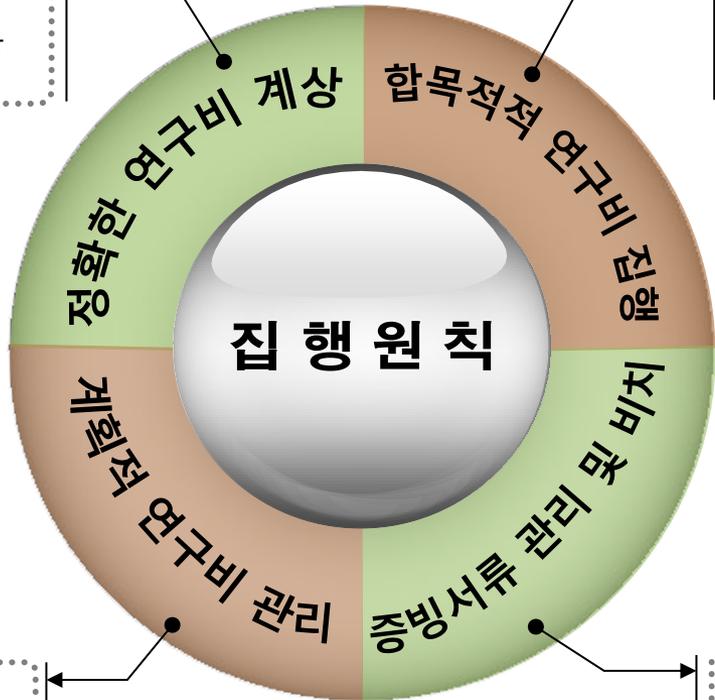
# II. 연구비 일반사항

## 2 연구비 집행 주요원칙

연구비 집행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 있으므로 연구비 집행원칙 준수

- 연구비가 부당 또는 과다계상 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근거로 계상
- 협약기간 만료 후 부당 또는 과다 책정금액 환수 조치

- 연구비는 계획 및 목적에 맞게 집행
- 연구비는 연구과제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불가



- 연구종료 즈음하여 기자재나 다량의 시약재료 구매 사양

- 연구비 집행의 증빙은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하며, 연구종료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존

### 3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관리 및 사용
5. 하위 과제의 조정 · 감독
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 Ⅱ. 연구비 일반사항

## 4 연구비 변경에 관한 사항

### ■ 연구비 변경 시 전문기관 사전 승인사항

비 목	변 경 내 용
인건비	인건비를 당초계획보다 20%이상 증액하려는 경우(이월 인건비 제외) (2013.1.1 이후협약과제 : 승인 → 보고)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학생인건비를 당초계획보다 5%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구장비 · 시설비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 시설비를 당초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당초계획과 다른 연구장비 ·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를 당초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 Ⅱ. 연구비 일반사항

## 5 연구비 비목구성

비목	세 목	세세목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 비통합관리기관
	연구장비 · 재료비	연구기자재비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등
	연구활동비	국외여비,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논문게재료 등
	연구과제추진비	국내여비, 연구환경유지비, 회의비 등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경비
	연구지원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등
	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기술창업 출연 · 출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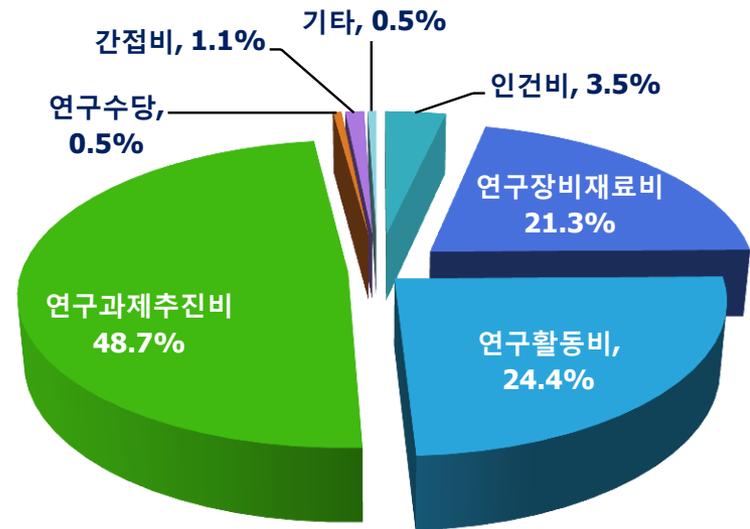
## 연구비 계상 및 집행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 1 연구비 비목별 부적정 집행 현황

(건수) 최근 3년간('13년~'15년까지) 연구비 부적정 집행현황 550건의 분석결과,  
연구과제 추진비 → 연구활동비 → 연구장비 및 재료비의 부적정 집행건수가 많음

구분	건수	비율
인건비	19	3.5%
연구장비및재료비	117	21.3%
연구활동비	134	24.4%
연구과제추진비	268	48.7%
연구수당	3	0.5%
간접비	6	1.1%
기타(이자)	3	0.5%
합계	5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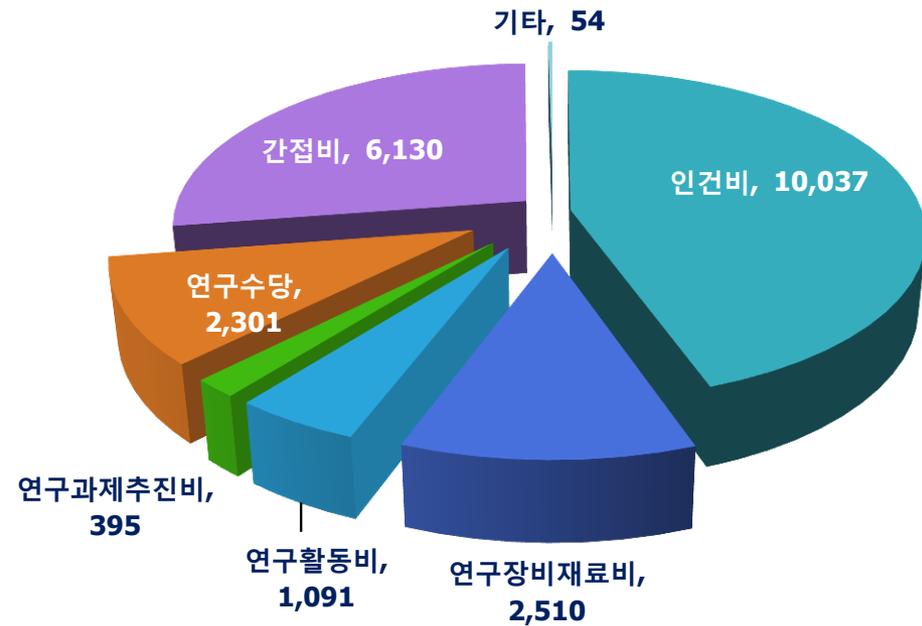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 1 연구비 비목별 부적정 집행 현황

(평균금액) 최근 3년간('13년~'15년까지) 연구비 부적정 집행현황 550건의 분석결과,  
건당 회수금액은 인건비 → 간접비 → 연구장비 및 재료비 순으로 많음

구분	평균금액(1건당)
인건비	10,037천원
연구장비및재료비	2,510천원
연구활동비	1,091천원
연구과제추진비	395천원
연구수당	2,301천원
간접비	6,130천원
기타(이자)	54천원
합계	22,517천원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 2 연구비 비목별 집행관리

### 인건비(1/2)

#### 정의

-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계상

구분	세부산정내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급여총액 × 참여율</li><li>-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력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li></ul>
기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금액 × 참여율</li></ul>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 2 연구비 비목별 집행관리

### 인건비(2/2)

#### 계상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참여연구원은 인건비 계산 시 총 130% 까지 계상할 수 있으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동비목 계산을 목적으로 참여율을 계상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은 130%까지 지급용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나, 미지급용 인건비 계상 불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1호 내지 제3호 기관(KAIST,GIST,DGIST)이 인건비가 기 확보된 경우: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 (단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과제: 참여율 최대한도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별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참여 가능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 인건비 관련 부당집행 기준

2013~2015 인건비 부적정 건수 550건중 19건(3.5%)  
2013~2015 인건비 부적정 금액 780백만원 중 191백만원(24.5%)

구분	부당집행 기준
공통	①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②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③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④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내부 인건비	⑤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구분	부당집행 기준
외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data-bbox="349 534 1174 572">⑥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li><li data-bbox="349 601 1354 639">⑦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li><li data-bbox="349 668 1470 706">⑧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li><li data-bbox="349 735 1789 839">⑨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li><li data-bbox="349 868 1740 972">⑩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 경우 변경내역을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li></ul>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 인건비 관련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지적사례

### 사례 1

기업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계획서에 과다계상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참여연구원이 이미 퇴사하였으나,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것으로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를 한 경우



인건비 지급 관련 서류 확인 및 건강보험취득상실신고서 조회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 3 연구비 비목별 집행관리

### 연구장비·재료비

#### 정의

- 해당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 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등
- 시약·재료구입비·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계상

- 실제 필요한 경비 계상
  - ※ 연구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연구장비 및 재료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계획변경 승인을 득한 후 집행(범용성 장비는 계획서에 있는 경우만 인정)
  - 단, 비영리기관인 경우, 개인컴퓨터에 한해 자체규정에 따라 변경 절차를 이행한 경우 구매 가능

#### 집행

- 연구장비·재료비는 주관연구기관의 구매·검수 규정에 의거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 및 방법으로 집행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 범용성 장비

### 범 위

####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

구분	세부 내용
사무기기.장비	◦ 책상, 책장, 의자, 작업대, 복사기, 팩스, 전화기, 소화기, 운송장비 등
컴퓨터 및 주변기기	◦ 일반업무용컴퓨터(개발용 컴퓨터 제외), 프린터, 통신용 모뎀, 스캐너, 스피커, 일반 업무용 S/W (워드, Office, 번역 S/W 등) 등
시청각기자재	◦ OHP, 슬라이드, 빔프로젝트 (액정비전 포함), 영사막,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등
일반 가전제품	◦ 냉장고, 보일러, 방열기, 전기로, 에어컨, TV, 비디오, 난로, 선풍기, 오디오, 유. 무선 전화기, 조명기기, 정수기, 전자수첩, 세단기 등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 연구장비 · 재료비 관련 부당집행 기준

2013~2015 연구장비 및 재료비 부적정 건수 550건중 117건(21.3%)  
 2013~2015 연구장비 및 재료비 부적정 금액 780백만원 중 294백만원(37.7%)

구분	부당집행 기준
<p>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 장비</p> <p>(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p>	<p>①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p> <p>②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 · 시설 · 공간에 대한 임차료</p> <p>③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 (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단, 비영리 기관의 PC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 제외</p> <p>④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 일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 되지 않은 기기 · 장비 및 부수 기자재 구입비</p>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구 분	부당집행 기준
<p>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⑤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 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 금액</li> <li>⑥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 예산심의회(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 원 이상의 장비</li> <li>⑦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li> <li>⑧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 한 경우는 예외)</li> <li>⑨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li> <li>⑩ 구입처로부터 납품 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li> </ul>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구분	부당집행 기준
<p>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p>	<p>11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p> <p>12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p>
<p>시제품·시작품·시험 설비의 제작경비</p>	<p>13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 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p>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 연구장비 재료비 관련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지적사례

### 사례 1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에는 토너, A4 등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컴퓨터, 프린터 등 범용성 장비를 납품받아 사용하다가 드러난 경우



토너 등과 같은 소모성 재료 과다 구입한 결과, 납품업체의 거래원장을 입수하여 비교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 연구장비 재료비 관련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지적사례

### 사례2

영리기관이 연구계획서에 미계상된 컴퓨터 구입을 위해 컴퓨터 관련 부품 (메모리, CPU, 그래픽카드 등)을 구입하고, 구입한 부품을 조립하여 컴퓨터로 사용하다가 드러난 경우



일시 또는 여러번에 나누어 컴퓨터 부품을 사실을 의심하여 LAB을 방문하여 현지 조사 실시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 4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 연구활동비

#### 국외여비

##### ●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연구기관 기준에 따라 집행,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실 소요경비
  - 국공립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
- ※ 기관여비기준이 있는 경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은 불인정

####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논문게재료 등
- 연구기관 기준에 따라 지급,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실 소요경비

#### 전문가활용비 등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회의장 사용료,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기준이 없는 경우 실 소요경비
-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통역료 등은 해당 전문가의 계좌에 이체
- 시험분석,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세부(단위)과제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 경비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 연구활동비 관련 부당집행 기준

2013~2015 연구활동비 부적정 건수 550건중 134건(24.4%)  
 2013~2015 연구활동비 부적정 금액 780백만원 중 146백만원(18.7%)

구분	부당집행 기준
국외 출장여비	① 수행기관의 여비기준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정하여 지급한 금액 ②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③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④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⑤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⑥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 요금 등 ⑦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 구입비 등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구 분	부당집행 기준
시험·분석·검사, 임상 시험, 기술 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⑧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활용비 단, 시험·분석·검사 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 1.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2.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 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 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 분석을 의뢰 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 (예: ○○연구원장, ○○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구분	부당집행 기준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⑨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 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11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12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 목록이 없는 영수증 13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14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 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15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16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 계획서에 반영 시 인정)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 연구활동비 관련 지적사례 (국외여비)

### 사례 1

연구책임자 A 교수가 해외 출장지인 B 국가에 출장 후 별도의 행정행위 없이 단순한 자료 수집 목적으로 C 국가를 방문하면서 해외 출장비를 수령



과제와 무관한 해외출장경비 지급 불가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 5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 연구과제추진비

#### 국내여비

##### ●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연구기관 기준에 따라 집행,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실 소요경비
  - 국공립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
- ※ 기관여비기준이 있는 경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은 불인정

#### 연구환경유지비

#####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및 유지 비용

-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 및 유지 비용

#### 회의비 등

- 회의개최를 위한 준비비 및 다과비, 회의식대(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 제외)
  -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및 집행
-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불인정)
- 기타 사무용품 등 소모성 경비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 연구과제추진비 관련 부당집행 기준

2013~2015 연구과제추진비 부적정 건수 550건중 268건(48.7%)  
 2013~2015 연구과제추진비 부적정 금액 780백만원 중 106백만원(13.6%)

구분	부당집행 기준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않은경우그차액에 해당하는금액 ②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 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③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④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 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구분	부당집행 기준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⑤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 2014.8.12 이후 협약을 체결한 과제부터 적용 ⑤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⑥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기관 내부직원(내부 참여 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⑦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⑧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식대로 집행된 금액 ⑨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 시기와 중복된 야근 식대 ⑩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 연구과제추진비 관련 지적사례 (여비)

### 사례 1

연구책임자 A 교수가 이공분야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와 관련 없는 평가회의, 박사논문 심사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연구과제에서 여비를 집행



여비의 집행 목적이 연구과제와 무관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 연구과제추진비 관련 지적사례 (여비)

대학의 국내·외 출장 여비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의 여비단가 기준을 이중으로 운영·하면서 부당 집행한 국내·외 출장여비 지적(감사원 감사 2016.11)

<국내·외 출장여비 이중 기준의 대표 유형>

### ① 산학협력단 규정 별도로 마련된 경우(2개의 규정)

- 산학협력단 여비 단가 기준을 본교 여비 단가 기준에 비해 높게 두는 등 과다 지급

### ② 본교 규정과 산학협력단 여비 규정이 통합된 경우

-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의 직급별 여비 단가 기준을 차등하여 설정한 후 연구책임자라는 직급을 추가적으로 두어 정교수 등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비즈니스클래스 항공 및 상위 숙박비 등)

- 외부 “project”의 경우 여비 단가 기준을 초과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연구자가 고가의 호텔에서 숙박 후 청구 시 실비 지급

### ③ 연구비 관리 지침만 있는 경우

- 연구비관리지침만 있고 본교의 공무상 출장 여비기준 자체가 없이 해당 경비는 실비정산(지침에 따라 조교 등 연구책임자는 국외출장 시 비즈니스 등급 이용)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 연구과제추진비 관련 지적사례 (회의비)

### 사례 1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가맹점은 일반음식점이나 실제 장소는 와인바, 호프집,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서 연구비를 집행



음식점 상호와 로드뷰를 통해 실질 확인 가능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 연구과제추진비 관련 지적사례 (회의비)

### 사례2

타기관 소속 연구자(주로 선후배 관계)를 회의 참석 한 것으로 회의록에 허위 기재하여 회의비 집행



원소속기관 복무사항 실질 확인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 6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 연구수당

#### 정 의

- 과제 관련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인센티브)

#### 계 상

- 인건비(미지급포함)+학생인건비의 20%범위 내에서 산정

#### 집 행

- 참여연구원 대상으로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원 계좌로 이체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 연구수당 관련 부당집행 기준

2013~2015 연구수당 부적정 건수 550건중 3건(0.5%)  
2013~2015 연구수당 부적정 금액 780백만원 중 7백만원(0.9%)

구분	부당집행 기준
연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li><li>②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li><li>③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li><li>④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li><li>⑤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li><li>⑥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li></ul>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 7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 위탁연구개발비

#### 정의

- 연구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 계상

-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 합계 40%이내  
\* 인건비는 지급용 인건비만 포함(미지급인건비 제외)  
본 과제와 동일하게 모든 비목(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산정 가능

#### 집행

- 위탁연구기관 계좌로 이체함
- 당초 계획금액의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사전승인 필요
- 위탁과제를 신설할 경우 전문기관 사전승인 필요
- 정산은 위탁연구기관에서 본 과제수행기관에 정산결과를 제출, 본 과제 정산보고 시 위탁과제 포함 제출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 위탁연구개발비 관련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위탁연구 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초과계상·집행금액</li><li>②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li></ul>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 8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 간접비(1/2)

#### 정의

-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 활용지원비

#### 계상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한 간접비율 ×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비제외))

기관구분	간접비	비고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고시 기관)	직접비 × 고시비율 이내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미고시 기관)	직접비 × 17% 이내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직접비 × 10% 이내	
영리법인**	직접비 × 5% 이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하는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 포함

#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 8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 간접비(2/2)

#### 집행

- 자체 운용요령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통합 관리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시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
- 대학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등으로 사용 가능
- 협약 당시 간접비 금액 대비 증액 불가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년도 기관 간접비 총액의 10%이내 지급가능
- 기술창업 출연 및 출자금 해당년도 기관 간접비 총액의 10%이내 (설립 후 5년까지) 사용 가능

### 간접비 관련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간접비	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②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③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 **IV 제재조치 및 환수**

# IV. 제재조치 및 환수

## 1. 제재조치 유형

구분	관련규정	내용
위반에 따른 체계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3년)</li> <li>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 누설 및 유출 (2년, 해외는 5년)</li> <li>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3년)</li> <li>4.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 미납부 또는 지연 (2년)</li> <li>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의 개인명의로 출원 및 등록 (1년)</li> <li>5. 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20%이하 : 3년 이내</li> <li>-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20%초과 30%이하 : 4년 이내</li> <li>-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30%초과 : 5년 이내</li> </ul> </li> <li>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3년 이내)</li> <li>8.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게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li> </ol> <p>* 상기 항목의 둘 이상 위반한 경우 5년 까지 합산</p>

# IV. 제재조치 및 환수

## 2. 제재조치 유형별 현황(2009년~2016년 기준)

부처	제재 사유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교육부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1	1	-	-	3	5
	연구부정행위	-	-	1	-	3	4
	연구비 용도의 사용	6	6	2	4	31	49
	연구수행 포기	-	1	-	2	1	4
	연구결과 불량	70	20	38	1	123	252
	소계	77	28	41	7	161	314
미래부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	-	2	-	-	2
	연구부정행위	-	3	-	1	-	4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0	4	2	6	21	43
	연구수행 포기	-	-	-	5	2	7
	연구결과 불량	2	-	-	3	-	5
	소계	12	7	4	15	23	61
합계		89	35	45	22	184	375

# IV. 제재조치 및 환수

## 3. 부당집행 기준

### 부당집행 기준

- ①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완료된 직접비는 제외  
(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 ②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 ④ 연구비카드(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 다만,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IV. 제재조치 및 환수

## 부당집행 기준

- ⑤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 ⑥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 ⑦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 다만,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
- ⑧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집행 금액
- ⑨ 환급 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 IV. 제재조치 및 환수

## 4. 제재부과금의 부과기준(2015.11.28 개정)

연구용도 외 사용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 IV. 제재조치 및 환수

## 5. 제재부과금의 부과 가중 기준(1/2 범위내)

-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 출연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제재부과금의 부과 감경 기준(1/2 범위내)

-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전문기관 등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하고, 조사 과정 중에 연구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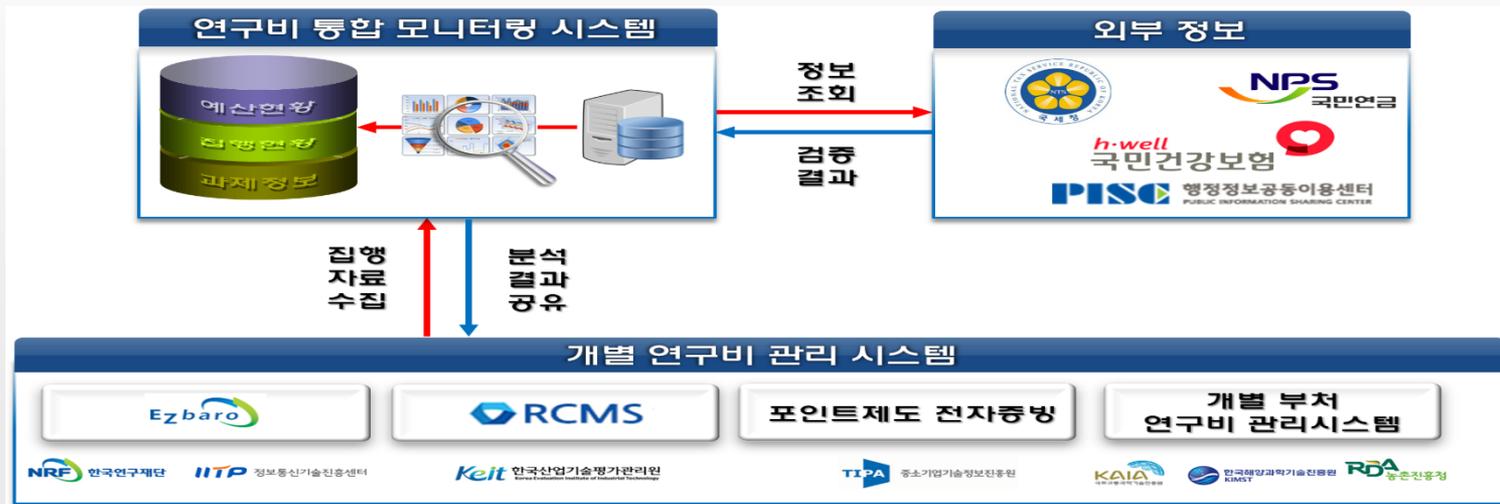
## 기타 참고사항

# V. 기타 참고사항

## 1 연구비 집행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 범부처 연구비집행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추진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비 집행부분에서 부처별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정보공유 미흡으로 부정 집행 사례 지속 발생
- 연구비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부처별 구축 운영하고 있는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실시간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필요성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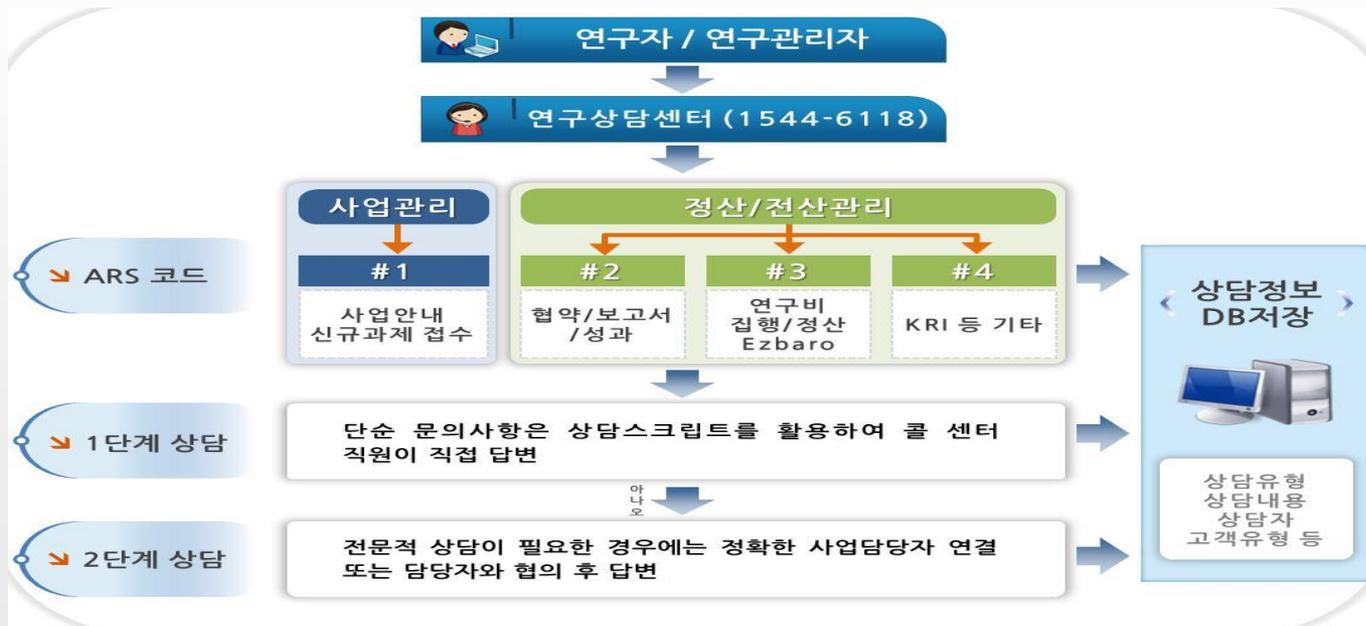


# V. 기타 참고사항

## 2 연구상담센터 운영

### ○ 연구상담센터 통합운영 추진

- 기존의 정산안내와 전산안내를 통합하고, 사업안내 부분까지 확대하여 “연구상담센터” 를 정산실에서 통합 운영(2017.1.1.운영개시)



# V. 기타 참고사항

## 2 연구상담센터 운영

### ○ 연구상담센터 업무 범위

-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관리 업무, 사업비 정산 업무, 전산 업무

구분	업무범위	비고
사업관리	◇ 사업 공고 및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 ◇ 협약체결 및 협약 변경에 관한 사항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접수(on-line)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관리 사항 등	
사업비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접수 및 정밀정산 업무 보조 ◇ Ezbaro시스템 및 연구비 카드 관련 상담 등	
전산관리	◇ Ernd시스템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KRI시스템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전산시스템 관련 상담 등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접수 및 정밀정산 업무 보조	

정직한 연구의 첫 걸음!

연구비 집행을 투명하게

감사합니다